

#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6년 12월 21일

- 회부일자 : 1996년 12월 21일

다. 상정일자 : 제132회 정기회

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('96. 12. 26) 상정, 심의답변, 이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 )

가. 제안이유

- 도로점용료의 신정기준등 점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이 정한 신정기준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,

등 도로점용료 신정기준 등이 개정('96. 7. 1)됨에 따라 우리도의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이 기준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도로점용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도로점용료 산정금액 절사 <조례 제3조 제5항>
  - 10원 미만 → 100원 미만
- 점용물의 종류중 수도관 및 기타관의 직경구분을 세분화 <별표 1>
  - 「직경 1m초과」 → 「직경 1.0m초과~2.0m이하, 직경 2.0m초과~3.0m이하, 직경 3.0m초과」로 세분
- 돌출간판을 간판에 포함 명문화 <별표 1>
- 소액 부정수 <조례 제5조>
  - 500 미만 → 5,000원 미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도로법 시행령에 개정됨으로써 국도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관리 및 징수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 (참석위원 7인 만장일치)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- 신구조문 대비표